	규정		문서번호	TWP-A513	
	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축구부 운영 관리 규정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

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조직 및 업무)
- 제3조(재정)
- 제4조(운영위원회)
- 제5조(후원회)
- 제6조(축구부 학생 관리)
- 제7조(수업일수 및 출석인정)
- 제8조(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)
- 제9조(심의 및 승인)
- 제10조(규정 및 지침준수)

부 칙

작성부서	학생취업처	제정일자	2018. 07. 09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사무처장	학생취업처장	교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
규정

축구부 운영 관리 규정

문서번호	TWP-A513
제정일자	2018. 07. 09.
개정일자	
개정번호	0
페이지	2/4

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8. 07. 09.	· 규정 제정

	규정		문서번호		TWP-A513	
			제정일자		2018. 07. 09.	
	축구부 운영 관리 규정		개정일자	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	3/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축구부(이하“축구부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업무) 축구부 운영은 협약업체인 CY CORPORATION(이하 “CY”라 한다)에서 운영한다.

① 감독은 CY에서 임명하며,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선수들의 훈련계획 및 실시업무
2.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및 효과적인 훈련실시 업무
3.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유치에 대한 업무
4. 경기의 평가 및 종합적인 분석 업무

② 코치는 감독의 추천과 축구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CY에서 임명하며,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를 지도하고 실전에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한다.

③ 행정담당은 이 대학교의 직원으로 하며, 축구부의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재정) 축구부의 재정은 CY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, 대학은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.

① 운영위원회는 CY 대표 1명, 교직원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, 학생취업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축구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(감독 및 코치 초빙, 사업계획수립, 경기실적 평가, 기금조정, 기타)을 심의 결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운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v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후원회) 축구부의 운영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축구부 학생 관리) 축구부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.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숙소에서 퇴소 조치한다.

1. 비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후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휴학 또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자

2. 선수로서 기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축구부에서 무단이탈한 자

2. 선수로서 대학교 발전에 누를 끼친 자

3. 숙소 내에서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자

4. 훈련 및 경기장에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13	
	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축구부 운영 관리 규정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

5. 기타 이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

제7조(수업일수 및 출석인정) ① 이 대학교는 학생선수가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외의 수업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② 이 대학교는 대회시즌에 따른 수업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사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수업을 개설하거나 시즌 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) ①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⁰ 이상을 취득하여야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

②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나 출석 일수의 미달로 학점 미달이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 단, 부상이나 질병,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학점 미달이 된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9조(심의 및 승인) 협약업체인 CY의 매 학년도 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규정 및 지침준수) 이 규정 외에 축구부 운영은 다음 관련 규칙을 준수한다.

1. 교육부 “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”(2017.04.07.)
2. 문화체육관광부 “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”(2016.03.15.)
3. TWP-A301 학사 규정
4.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“대학스포츠 운영규정”(2016.01.29.)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.